



Business Proposal



t&P Partners

2018

을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아웃소싱 서비스 안내

For additional information contact us atnp.co.kr

Case Study



한 번 더 세금을 내야한다고?

베트남 현지법인에 3년 간 주재원으로 발령받은 김 차장, 작년에 인사팀으로부터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으로 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당초 베트남 정부에 세금을 내면 납세의무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한국의 거주자이므로 한국 정부에 다시 종합소득세를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담당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검토해 보니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무려 1천만 원에 달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며, 김 차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을종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란?

내국 법인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수행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를 신고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납세조합 가입자는 제외)는 연말정산을 하였던 내국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0년 내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내인 외국인거주자의 경우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국내로 송금되거나 국내에서 지급된 경우에만 합산 과세합니다. (소법제3조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소법 제70조)

을종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FAQ's

?

을종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는 무엇이 있나요?

✓

-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20%(부정무신고 40%, 국제거래 60%)
- 납부·환급 불성실가산세: 무납부(과소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 무기장가산세(장부작성대상의 경우):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그 외에도 조세포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재산국외도피 등 형사처벌이 추가적으로 따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급여담당자가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하는 건가요?

✓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해외파견근로자 역시 국내에 있는 근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물렸던 것처럼 우리 회사의 해외파견근로자 그 분도, 업무가 아닌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은 자신도 모른 상태로, 어떠한 공지도 받지 못한 채로 탈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 개인이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회사 측에 오는 손실도 없지는 않겠죠.

따라서 이 문제를 **인사팀이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해외파견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정확한 안내하고 대처방안에 대한 가이드를 공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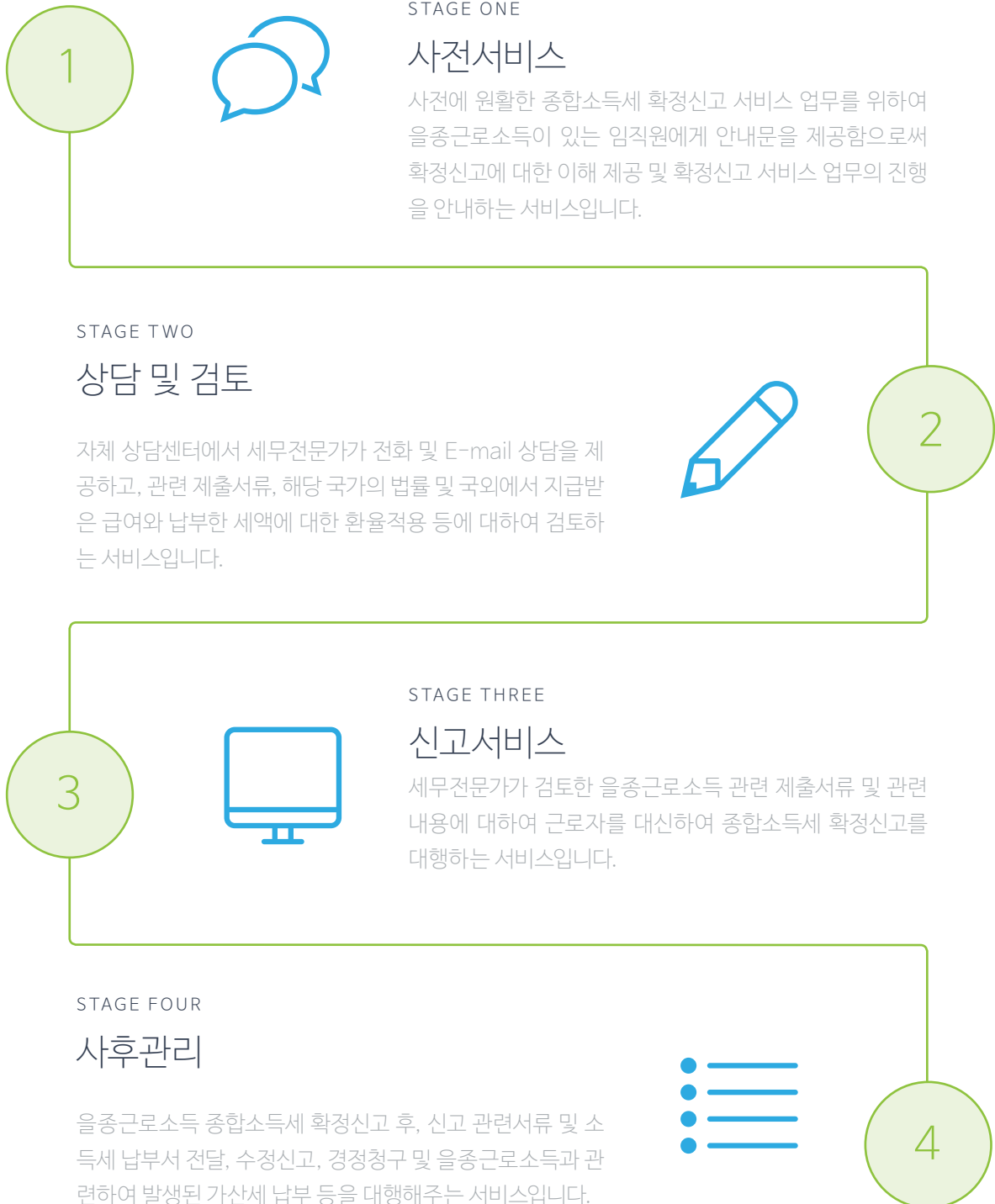
미신고하면 국세청이 국외소득을 알 수 있을까요?

✓

네,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원천 근로소득인 을종근로소득의 미신고 내역을 국세청이 적발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국세청은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의 체결로 전 세계 77개국으로부터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과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는 행위는 국가 간 공조망에 걸려 더 이상 발붙이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을종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One-Stop 서비스



9

Simple and Perfect with At&P Partners



04506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31 이화빌딩 3층
(주)에이티앤피파트너즈



tel. 02-704-9717
fax. 02-704-9769
bpo@atnp.co.kr